

## 불교천태중앙박물관 직원 채용 공고

불교천태중앙박물관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 
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4. 4. 26.

불교천태중앙박물관장

### 1 채용예정 담당직무 등(총 1명)

코드	직종	직명 (직급)	채용예정 인원	담당예정직무	근무부서
-		직원	1	박물관 서무 및 회계업무, 박물관 운영·관리 관련 업무 등	

채용예정일 : 2024. 5. 16.자 예정

### 2 근무조건

근로계약기간

응시 코드	직종	직명(직급)	근로계약기간	비고
-	계약직	직원	~ 2024. 12. 31.	박물관과 협의 결정

※ 단, 사업종료일 이전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무실적 평가 등에 따라 근무실적 평가 등에 따라  
1년 이내 근로계약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검토.

□ 보수(연봉액)

	직종	직명(직급)	급여 (4대보험 포함)	비고
-		직원	월 2,060,740원	

□ 연봉 외 수당 등

별도 수당 없음(출장시 박물관에서 정한 출장비 지급)

□ 근무시간

주 5일(월~금요일) 40시간, 1일 8시간(08:30~17:30, 점심시간 1시간)

※ 다만, 담당예정직무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외 휴일근로 근무가 발생할 수 있음  
(공휴일 근무시 익주 내에 대체휴무 부여, 초과근무 수당 없음)

### 3 채용자격기준

□ 응시자격(공통)

○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단양군 거주자

**【 결 격 사 유 】**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기타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재사항이 있는 자

○ 만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
□ 채용자격기준 등

- (채용자격기준) 고졸 이상
- (우대사항)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
- (가산점) 없음

**4** 시험방법

□ 채용방법 : 1차시험(서류전형) ⇨ 2차시험(면접)

□ 1차시험(서류전형)

-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
서류전형 심사기준(적극적 전형시)
1. 자기소개서 2. 직무수행계획서 3. 우대요건 및 가산점: 컴퓨터 활용 정도

□ 2차시험(면접)

- (평가방법)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(평정요소) ① 박물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
- (평가방식) 대면 면접을 원칙(변경시 사전 응시자 개별 통보)

기준
1. ① 박물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

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
2. 평가방식: 대면 면접(변경시 사전 응시자 개별 통보 예정)

3. 최종합격자 결정

-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(단, 면접시험 만점의 60% 미만의 경우 불합격)
- 동점자 발생 시 '상' → '중'의 개수가 많은 자를 우선 순위로 결정
-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'하'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'하'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

※ **최종 면접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**

## 5 채용일정

	내용	일정	비고
1	채용 모집공고	'24. 4. 26.(금) ~ 5. 3.(금)	게시판 등
2	응시원서 접수	'24. 5. 2.(목) ~ 5. 3.(금)	직접 방문접수
3	1차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 발표	'24.5.7.(화)	개별통보
4	2차시험(면접)	'24. 5. 8. ~ 5. 10./중1일	개별통보
5	최종 합격자 발표(예정)	'24. 5. 13.(월)	개별통보

※ **채용 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**

##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- (응시원서) 지자체 게시판 다운로드 후 작성
- (접수기간) 2024. 5. 2.( ) 10:00 ~ 2024. 5. 3.(화) 17:30/근무시간 내
- (접수방법) 방문접수(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음)
- (문의전화) 불교천태중앙박물관 행정실(☎043-423-9103)

※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
※ “응시번호”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, “응시표”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.

## 7

## 제출서류

	제출서류명	제출부수	비고
1	서식 1]	1부	공통[ ]
2	이력서 【서식 2】	1부	공통[필수]
3	자기소개서 【서식 3】	1부	공통[필수]
4	직무수행계획서 【서식 4】	1부	공통[필수]
5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【서식 5】	1부	공통[필수]
6	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【서식 6】	1부	공통[필수]
7	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【서식 7】	1부	공통[필수]
8	최종학위 졸업증명서	1부	해당자에 한함
9	경력(재직)증명서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포함	각 1부	해당자에 한함
10	자격증 사본	각 1부	해당자에 한함
11	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1부	해당자에 한함
12	장애인등록증 사본(또는 장애인 증명서)	1부	해당자에 한함
13	보건증(보건소 발급)	1부	합격자 제출
14	범죄 경력회보서(경찰서)	1부	박물관

## 8

## 제출서류 인정기준

○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

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

\*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자격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대체 서류 제출

- 근무경력은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,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
  - ※ 폐업 등 기타 사유로 경력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인정 불가
- 경력(재직)증명서상에 근무기간, 소속, 직위(직책), 주당 업무시간, 담당 업무가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,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우대점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근무기관에 재직 중이라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재직증명서로 대체
  - ※ 재직증명서는 재직일부터 발급일자까지의 재직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산정
-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의 학위증명서, 경력증명서, 자격증명서의 경우 발급일 제한이 없음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에 대한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

## 9 기타사항

-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채용후보자(최종합격자)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\*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점수가 높은 사람을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  - ※ 채용후보자(최종합격자)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이란 임용포기, 결격사유에 따른 합격취소, 채용후보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
- (채용서류의 반환)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(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)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

## 반환 <별지 서식8> 참고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할 수 있음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음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음
- (응시자 귀책사유)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,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경우 응시자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공고 상의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,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
- (합격취소) 시험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합격자 통보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. 또한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
- (채용 구비서류) 최종합격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  1. 주민등록 등·초본 각 1부
  2. 가족관계등록부 1부
  3. 최종학력증명서 1부
  4. 자격증 사본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  5. 경력증명서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  6. 일반건강검진결과통보서(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)